

〈서 면 질 의〉

○ 이준영 위원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이준영 위원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달리 소정의 전문직 기술과 훈련과정을 선발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청해 제출한 '98년이후 10월 현재까지 특채자 현황을 보면 그 기준과 투명성이 분명치 않아 소방업무 종사에 꼭 적합한 사람들이 채용되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채자를 연도별로 보면 '98년 2월 34명, 4월 10명, 6월 2명, 8월에 1명 등 네차례에 걸쳐 총 47명이 특채되었으며, '99년도에는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10명과 15명 등 25명이 채용되었고 2000년도에는 6월에 38명을 특채해 최근 3년간 110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사유를 보면 소방학과 졸업자가 20명, 운전직이 38명, 응급구조사가 30명, 향해 및 전산·통신부문이 15명, 기능직이 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질의 1)

'98년이후 10월말 현재 특채자 내역을 보면 총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소방학과 졸업자 20명, 소방차량운전요원 38명, 소방관서 기능직 3명, 향해·기관·통신·전산직이 15명, 응급구조사 30명 등 총 106명입니다. 총 채용인원과 세부내역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용자를 누락시킨 것인지? 계산상의 오류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소방학과를 졸업하면 누구나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학과 졸업자 중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특채된 소방차량 운전요원의 채용당시의 연령을 보면 27세부터 57세까지 다양하게 특채되었습니다. 57세라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할 연령인데 운전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특별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식정보강국에 대비하여 소방재난본부의 정보화구축현황을 보면 179개소에 대한 전산네트워크구축,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축 등 비교적 정보화시대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와 더불어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독거노인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점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행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3차례(1차 8억 4천만원, 2차 6억 8천만원, 3차 5억 2천만원)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들여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안양의 경우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 1)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현재 25개 소방서에서 시스템을 구축, 일부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중 독거노인 지원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하다면 독거노인 지원예산을 확충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3)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를 감안할 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시·군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조를 받는다면 독거노인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본부에서 어떠한 협조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들은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상 소방대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지속적인 훈련과 사전준비 태세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동두천 소방서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사상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상자 보상체계정비를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 1)

경찰이나 국가직 공무원은 공사상이 발생했을 때 국가보상이 가능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상자 보상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인데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보상심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경찰·국가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보상체계를 비교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질의 4)

주요 선진국의 공사상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출 요구)